



건축법 시행령

[시행 2024. 7. 30.] [대통령령 제34785호, 2024. 7. 30., 타법개정]

국토교통부 (건축정책과 - 건축제도 일반) 044-201-3762, 3763

국토교통부 (건축안전과 - 건축구조 규정 운영) 044-201-4991

국토교통부 (녹색건축과 - 건축설비·조경 규정 운영) 044-201-4753

국토교통부 (건축안전과 - 피난·마감재료 규정 운영) 044-201-4992

국토교통부 (건축정책과 - 건축감리 규정 운영) 044-201-4752

국토교통부 (건축정책과 -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) 044-201-3762, 3761

제55조(창문 등의 차면시설)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(遮面施設)을 설치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8. 10. 29.]